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민원감사담당관)

2021. 6. 10.



#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8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1. 5. 28.

라. 회부일자 : 2021. 5. 28.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직윤리 강화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1)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안 제2조제1항, 제2항)

- 2)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법관"을 "판사·변호사·검사"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표현 등 정비
- **4.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1조

# 5. 검토의견

### 가.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 등 위임사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나. 주요내용

- 1)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안 제2조제1항, 제2항)
- 2)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u>"법관"을 "판사·변호사·검사"로</u>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 3)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표현 등 정비

#### 다.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단서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u>하되, <u>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u>,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에 맞게 ①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u>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u>하고, ② "법관"을 "판사·변호사·검사"로 용어를 변경하며, ③ 또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수정한 것으로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개정하는 것임.
- 붙임 1. 관계 법령 1부.
  - 2.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1부.

# 붙임 1 관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 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 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 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⑥ 공직자유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 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붙임 2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 □ 설치근거

- O「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O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 □ 제도운영 목적

-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 하도록 하는 제도
  - ※ 1993년부터 실시 【우리구 : 개청시(1995.3.1.)부터 바로 실시】

# □ 위원회 구성 및 임기(개정 전)

- O **구성인원** : 5명(외부위원 3명 구청장 위촉, 내부위원 2명)
- 자격기준
  - 외부위원(3명) :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내부위원(2명) : 금천구의회 의원 1명과 금천구 소속공무원 1명

# ○ 임 기

- 외부위원 : 2년(1회 연임 가능)
- 내부위원 :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 ○ 기 능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 거짓 재산등록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재산등록 의무자의 조사의뢰 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 재산등록 부서 및 인원 : 14개 부서 (198명)

○ **신고대상 부서 및 기관** : 내부(10개 부서), 외부(4개 기관)

- 내부부서(10개 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세무1과, 세무2과, 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재무과.

위생과

- 외부기관(4개 기관) : 의회사무국(회계관직 관계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파견근무자)

○ 대상인원 : 198명

- 직급별

합 계	4급이상 5급 6급		6급	7급	기타	
198명	13명(7%)	11명(5%)	69명(35%)	91명(46%)	14명(7%)	

#### - 부서별

	대	상		합 계	비공개 / 공개		대	상	-	합 계	비공개 / 공개
Ė	할	겨		198	187 / 11	도	į	로	과	18	18 / 0
민원	감시	담당	당관	17	17 / 0	치	=	수	과	16	16 / 0
재	무	<u> </u>	과	6	6 / 0	위	,	냉	과	13	13 / 0
세	무	1	과	23	23 / 0	의	회	나 두	무국	12	2 / 10
세	무	2	과	28	28 / 0	특片	별 사	법	경찰	1	1 / 0
주	탄		과	11	11 / 0	시설	널 관	리 ;	공단	2	2 / 0
건	축	<u>.</u>	과	18	18 / 0	문	화	재	단	1	1 / 0
환	경	ļ	과	19	19 / 0	기			타	13	12 / 1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2명(구청장, 부구청장)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21명(구의원 10명, 4급 이상 11명)

※ 재산공개대상자 : 11명(구청장 1명, 구의원 10명)

# □ 재산등록 심사절차 및 처분기준

### ○ 심사절차



○ 심사기간: 심사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통상 11월까지 심사완료

####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법 제8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법 제8조의2)	3억원 이상	징계(해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 □ 위원회 개최현황 : 연2회 ~ 4회

연 도	일 시	회의안건	심의방법
	제93회 '19.3.4.(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확인의 건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여부의 건	위원회 개 최
	제94회 '19.3.28.(목)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확인의 건	위원회 개 최
<b>2019년</b> (4회)	제95회 '19.6.3.(월)	<ul> <li>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의 건</li> <li>고지거부신청자 재심사 및 신규 허가자 보고의 건</li> <li>공직자재산 수시 및 정기 변동신고에 대한 심사의 건</li> <li>재산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처리의 건</li> </ul>	위원회 개 최
	제96회 '19.11.12.(화)	<ul> <li>급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의 건</li> <li>고지거부신청자 신규 허가자 보고의 건</li> <li>공직자 재산 수시 변동신고에 대한 심사의 건</li> <li>재산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처리의 건</li> <li>대민업무 부서 재산등록 의무 조정 대상자 승인</li> </ul>	위원회 개 최
	제97회 '20.3.31.(화)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확인의 건	위원회 서면실시
<b>2020년</b> (4회)	제98회 '20.5.8.(금)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확인의 건	위원회 서면실시
	제99회 '20.6.26.(금)	○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10차) 개정의 건 ○ 고지거부신청자 재심사 및 신규 허가자 보고의 건 ○ 공직자재산 수시 및 정기 변동신고에 대한 심사의 건 ○ 재산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처리의 건	위원회 서면실시
	제100회 '20.11.20.(금)	○ 공직자 재산등록 수시 신고에 대한 심사의 건 ○ 재산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처리의 건 ○ 고지거부신청 신규 허가자 보고의 건 ○ 대민업무 부서 재산등록 의무 조정 대상자 승인 보고의 건	위원회 서면실시

# 참 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명단

(2021. 4월 기준)

직 위	성 명	사 진	성별	직 업	위촉일	만료일	비고	
위원장 <b>(외부)</b>	윤 ()		Ф	서울남부 지방법원 판 사	'19.4.3	′21.7.1.	임기만료(7월) <u>이 후</u> 신규위촉	
부위원장 (내부)	류 () ()		남	금 천 구 의 회 의 원	′18.7.30	재직기간		
위 원 <b>(외부)</b>	노ㅇㅇ		남	목 사	′19.4.3	′23.4.1.		
위 원 (내부)	<mark>공 석</mark> (소속 공무원)							
위 원 <b>(외부</b> )	(판사·검사·변	신〇〇 (前문일고교장) -임기만료-						
위 원 <b>(외부)</b>	조례 개정(6월) 이 후 신규위촉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위 원 <b>(외부)</b>	조례 개정(6월) 이 후 신규위촉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